




## 강전 · 약전류 전선 분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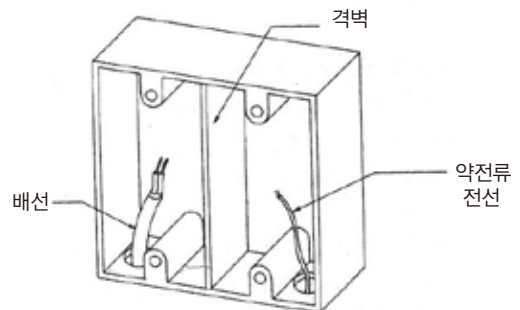
관련조항 : 판단기준 제196조

### Q

- 배선설비 시 강전선과 약전선류 분리에 대해 문의합니다. 내선규정의 2210-7에는 강전선과 약전선류 전선의 이격거리에 대해 설명되어 있으며, 표 2201-3의 비고 2에는 “매입형 콘센트를 넣는 매립박스 내에 약전선류를 시설하는 경우 격벽을 설치한다”고 설명되어 있습니다.
- 질의 내용
  - 1) 콘센트가 아닌 스위치의 경우 220V 선과 RS485 통신선의 매립박스 내에서도 격벽을 설치해야 하는지?(단, 220V 선과 RS485 통신선은 각각의 배관을 통해 매립박스 안으로 투입됨)
  - 2) 격벽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격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?

### A

- 질의 1)의 답변
  - 내선규정 2210-7의 저압 배선과 약전류 전선의 이격거리는 전압이 인가되는 전선, 콘센트, 스위치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, 애자를 사용하는 배선인 경우는 10cm 이상이며, 합성수지과, 금속관 등을 사용하는 배선인 경우는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.
  - 박스 내에서 저압 배선과 약전류 전선이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격벽을 시설해야 하며, 박스 내의 격벽 시설은 그림과 같습니다.
- 질의 2)의 답변
  - 박스 내에 격벽이 없는 경우, 저압 배선과 약전류 전선의 시설은 별도의 박스에 각각 시설하고,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 



[그림] 박스 내 격벽 시설